

제7호(2016. 2. 12.)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현황과 시사점

지성태 이현근



1.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1
2.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	4
3.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파급효과	7
4. 시사점	13

요 약

-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이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
- 2015년도에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4,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약 1,150억 원이 지급됨.
 - 그중,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각각 3,702호와 681호이며,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각각 1,406ha와 269ha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전체 포도농가의 12.6%(2014년 기준)이고 대부분 포도 주산지에 분포하며,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평균 재배규모가 0.4ha인 영세한 고령농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은 전체 포도 폐업 신청 면적의 76.3%에 달함.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노지포도 64.9%, 시설포도 39.4%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이고,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비중은 노지포도 75.1%, 시설포도 74.7%임.
- 폐업지원에 따른 포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 및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타 작목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됨.
 - 포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약 10%(2014년 기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상응하여 가격도 상승할 전망
 - 폐업지원으로 전국 포도농가 평균 재배면적은 0.50ha에서 0.52ha로 증가하고, 경영주 평균 연령은 65.2세에서 64.4세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
 -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기타 과수(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등)로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보임.
-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여 포도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 대체작목에 관한 정보와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1.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1.1. FTA 폐업지원제도란?

□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함께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의거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이 더 이상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
- 「FTA 농어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 중 다음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됨.
 - 첫째,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둘째,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재배·사육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셋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 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해당 연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미등록 시 등록 후 신청 가능),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철거·폐기 면적에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3년치를 곱하여 산출

“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

”

“

2004~2008년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대상 폐업지원금
2,377억 원 지급

”

- 경종작물: 철자·폐기 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
- 축산일반: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 낙 농: 농가당 평균 납유량×연간 l 당 순수익액×3년
- 산 란 계: 사육 마릿수×마리당 연 평균 순수익액×3년

1.2. FTA 폐업지원제도 추진 실적

□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FTA 농어업법」이 제정되고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실제 수입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까지 폐업지원제도 운용

- 2004~2008년 기간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에 대해 총 2,377억 원
의 폐업지원금 지급
 - 5년간 복숭아 폐업면적은 5,225ha, 시설포도와 키위는 각각 482ha와 106ha

표 1. 2004~2008년 폐업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ha, 억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소 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복숭아	490	169	1,202	406	1,516	501	1,335	450	682	269	5,225	1,796
시설포도	69	72	106	109	146	150	99	106	62	93	482	530
키 위	14	6	30	15	36	17	18	8	7	5	106	51
소 계	573	247	1,337	530	1,698	668	1,452	564	752	367	5,812	2,3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한·EU, 한·미 FTA 대응 차원에서 2011년 「FTA 농어업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피해 품목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폐업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함

- 「FTA 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 기준,
대상품목 범위와 선정 방식, 시행기간 등이 변경됨.
 - 지급액 산출 기준은 3개년분 ‘순수입’에서 3개년분 ‘순수익’으로 변경
되었고,
 - ※ 순수입: 조수입-경영비, 순수익: 조수입-생산비

- 대상품목은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 특정 품목에서 실질적으로 수입피해를 입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설투입비가 크고 재배·사육 기간이 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 대상품목 선정 방식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선정으로 변경되었으며,
- 시행기간은 당초 2004~2008년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5년(2011~2015년)으로 특정함.

□ 「FTA 농어업법」 개정 이후, 2013년도와 2014년도에 FTA 피해 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 2013년도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1,962억 원 지급
 - 폐업을 신청한 한우농가 18,260호 가운데 실제로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각각 819억 원('13년)과 1,143억 원('14년) 지급
 - ※ 당초 배정된 예산(300억 원) 부족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됨.

표 2. 2013년 폐업지원금 신청 현황

품목	신청대상		신청현황			
	농가수 (호)	마리수 (천 두)	농가수 (호)	마리수 (천 두)	지급단가 (천 원/두)	지급금액 (백만 원)
한우	번식우(암)			180	899	161,887
	비육우(수)	141,495	18,260	70	811	56,439
	소계			250	-	218,326

주: 신청과정에서의 기재 오류, 심사에서 탈락, 신청 취소 등의 이유로 신청현황과 실제 지급현황이 상이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014년도에 조, 수수, 감자, 고구마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고, 그중 번식우(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196억 원(신청금액 기준) 지급
 - 폐업 신청 대상 농가(6만 9천 호) 중 약 4.4%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신청 두수는 2만 3천 두로 전체 신청 대상 두수의 3.5% 수준임.

표 3. 2014년 폐업지원금 신청 현황

품목	신청대상		신청현황			
	농가수 (호)	마리수 (두)	농가수 (호)	마리수 (두)	지급단가 (천 원/두)	지급금액 (백만 원)
번식우 (한우송아지)	69,075	652,965	3,010	22,828	886	19,6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013년도와 2014년도
한우농가 대상 각각
폐업지원금
1,962억 원과
196억 원 지급

“
2015년도 체리,
포도(노지/시설), 밤,
육계농가 대상
폐업지원금
1,150억 원 지급
”

2.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

2.1. 2015년도 폐업지원 추진 경과

□ 「FTA 농어업법」에 근거 11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고, 그중 5개 품목이 폐업지원 대상품목 요건 충족

- 옥수수, 녹두,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4~7월 출하), 시설포도(8~12월 출하), 닭고기, 밤 등 11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충족함.
- 「FTA 농어업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폐지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품목 중, 다음의 3가지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됨.
 - (요건 1)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고,
 - (요건 2)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 (요건 3)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 중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15. 5. 19.)
 - 6월 18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이 고시되었고, 고시 일 이후 2개월간(6. 18.~8. 17.)의 신청기간이 주어짐.

□ 총 4,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이 이루어졌고, 폐업지원금으로 약 1,150억 원이 지급됨.

-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수가 3,702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설포도(681호), 밤(114호), 닭고기(70호), 체리(13호) 순임.
 - 폐원 면적도 노지포도가 1,406ha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밤(283ha), 시설포도(269ha), 체리(3ha) 순임.

2.2.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 분석¹⁾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대부분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포도 주산지에 집중됨.

-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한 농가의 비중이 각각 56.1%와 24.0%임.
 -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이 전체 신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1%와 24.8%임.
 -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노지포도 재배면적에서 폐업지원 신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2%와 18.7%임.
-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한 농가의 비중이 각각 24.1%와 39.4%임.
 -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이 전체 신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9%와 43.4%임.
 -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시설포도 재배면적에서 폐업지원 신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3%와 6.0%임.
-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다음으로 포도 재배면적이 큰 경기도의 경우, 포도 폐업 신청률이 가장 낮음.
 - 반면, 포도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라남도의 경우,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폐업 신청률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전체 농가의 12.6%이고, 평균 67세 이상의 고령농이 대부분임.

-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65~79세에 집중되었으며, 그 비중은 55.8%임.
 - 80세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64.9%가 65세 이상의 고령농임.
- 반면,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55~69세에 집중되었으며, 그 비중은 55.3%임.
 - 전체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39.4%임.

1) 본 분석 결과는 2015년 10월 14일까지의 신청현황에 기초한 것이며, 신청과정에서의 기재 오류, 심사에서 탈락, 신청 취소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현황과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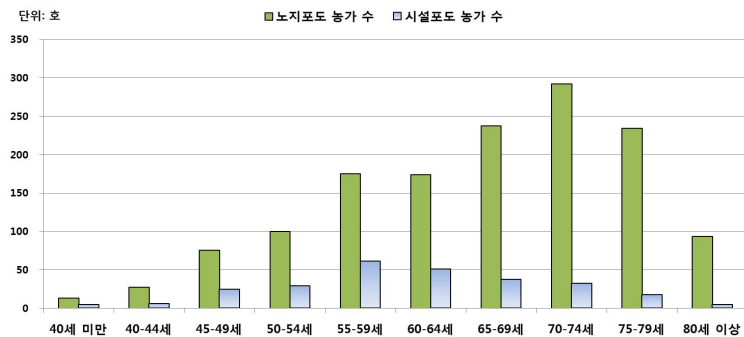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대부분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하는 평균 67세
이상의 고령농

”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
신청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4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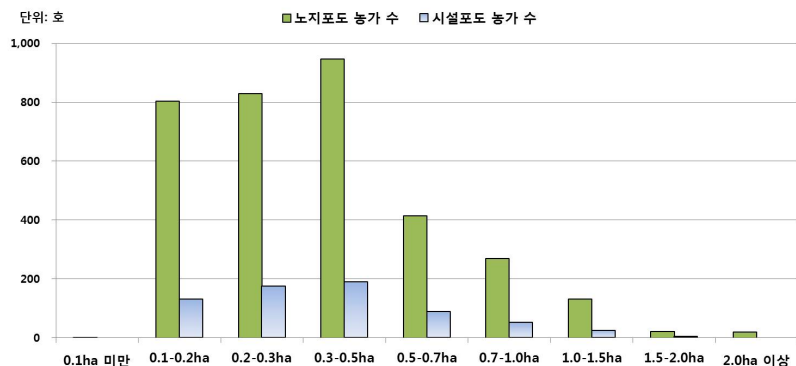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포도 폐업 신청 농가수 분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이며, 신청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4ha로 전국 평균 재배면적(0.5ha)보다 작음.
 - 노지포도 폐업 신청 농가 중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0.1ha 이상 0.5ha 미만이며, 그 비중은 75.1%임.
 - － 시설포도 폐업 신청 농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0.1~0.5ha 구간에 분포하며, 그 비중은 74.7%임.
 - 결국,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재배규모가 영세한 고령농이 대부분임.
 - － 노지포도 폐업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평균 재배면적은 0.38ha로 전체 신청 농가 평균 재배면적(0.41ha)보다 작음.
 - － 시설포도 폐업 신청 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의 평균 재배면적은 0.35ha로 전체 신청 농가 평균 재배면적(0.40ha)보다 작음.

그림 2. 규모별 포도 폐업 신청 농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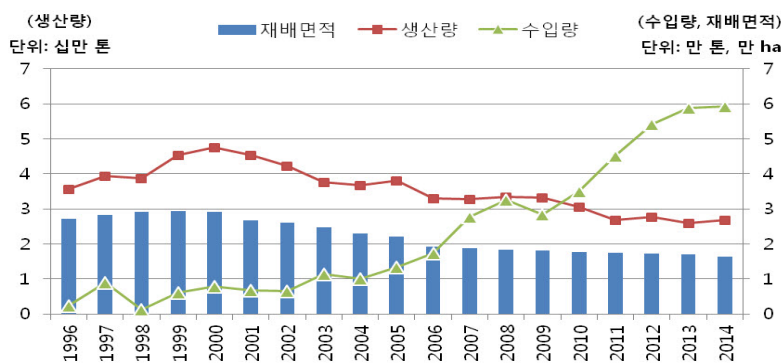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파급효과

3.1. 국내 포도산업 현황 및 과제

- 2000년대 들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 전국 포도 재배면적은 2만 9천 ha였으나 2014년 1만 6천 ha까지 감소
 - 2000~2014년 기간, 전국 포도 재배면적은 44.0%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4.1%임.
 - 동 기간 전국 포도 생산량은 47만 6천 톤에서 26만 9천 톤으로 43.5%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4.0%임.
 - 국내 포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포도 수입량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2000~2014년 기간, 포도 수입량은 8천 톤에서 5만 9천 톤으로 6.5배 증가

그림 3. 포도 재배면적,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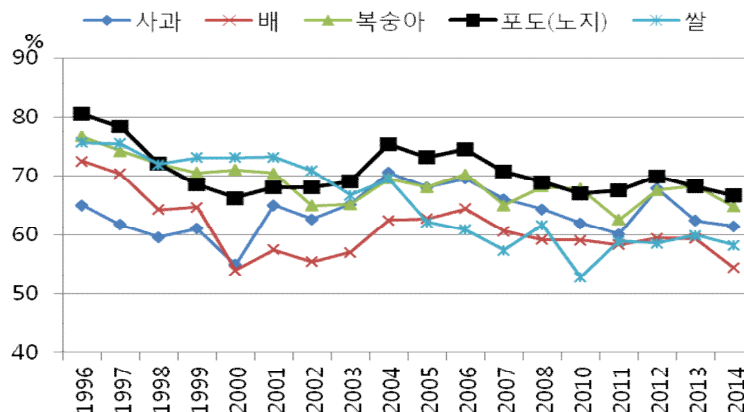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GTIS(www.gtis.com).

- 포도의 소득률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른 과실류(사과, 배, 복숭아)와 쌀에 비해 높은 편임.
 - 2003년 이후 포도 소득률은 다른 과실류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논에서도 포도가 재배되는 가운데 그 대체작목인 쌀의 소득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임.

2000년대 들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14년 포도(노지)의 소득률은 66.6%이고, 사과, 배, 복숭아와 쌀은 각각 61.4%, 54.4%, 64.7%와 58.1%임.

그림 4. 주요 과실과 쌀의 소득률 변화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 포도 소득률(66.6%)과 단위면적당 소득액(366만 원/10a)은 다른 과실류(사과, 배, 복숭아)와 쌀보다 높음 ”

- 2014년 기준, 포도의 10a당 소득액은 366만 원으로 다른 과실류(사과, 배, 복숭아)에 비해 컸고, 쌀(62만 원)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해 사과, 배, 복숭아의 10a당 소득액은 각각 342만 원, 273만 원, 314만 원임.

표 4. 주요 과실과 쌀의 소득현황(2014년)

단위: 천 원/10a, %

품 목	조수입 (A)	경영비 (B)	소 득 (C: A-B)	소득률 (C/A)
사 과	5,566	2,149	3,417	61.4
배	5,020	2,291	2,730	54.4
복숭아	4,850	1,710	3,139	64.7
포도(노지)	5,491	1,832	3,659	66.6
쌀	1,058	443	615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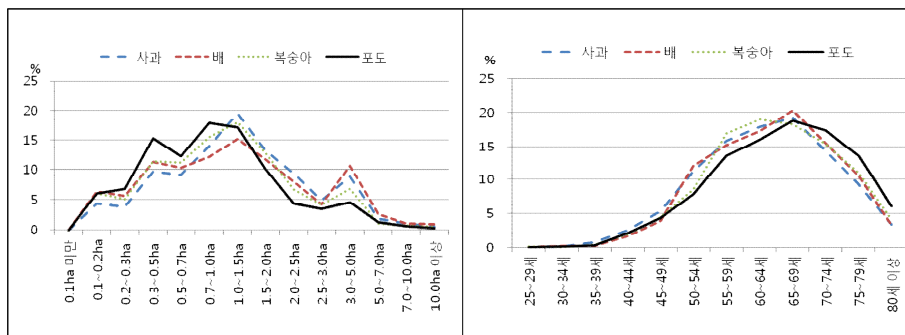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 포도의 소득률은 다른 과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가격 하락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포도(노지) 소득률은 2004년 75.3%에서 2014년 66.6%로 하락
- 2014년 노지포도 도매가격은 kg당 2,246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가격(2,625원/kg) 대비 14.4% 하락
- 시설포도 도매가격은 kg당 4,529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가격(5,587원/kg) 대비 18.9% 하락

□ 또한, 재배규모의 영세성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도 포도산업의 당면 과제임.

- 포도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58.2%로 사과(40.9%), 배(45.7%)와 복숭아(49.1%)보다 훨씬 높음.
 -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28.1%로 역시 사과(17.7%), 배(23.1%)와 복숭아(22.5%)보다 높음.
- 전체 포도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55.7%로 사과(46.2%), 배(49.5%)와 복숭아(48.7%)보다 높음.
 - 경영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19.6%로 역시 사과(12.6%), 배(13.8%)와 복숭아(15.1%)보다 높음.

그림 5. 주요 과실의 농가당 재배면적과 경영주 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국내 포도산업의 당면
과제는 재배규모의
영세성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3.2. 포도 폐업지원에 따른 파급효과

- 폐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포도농가의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폐업지원 면적은 총 1,675ha로 2015년 재배면적(15,397ha) 대비 약 11% 감소할 전망
 - 과거 5개년 평균 단수(1,601kg/10a)를 기준으로 생산량은 약 2만 7천 톤 감소하여 포도 총 생산량은 2014년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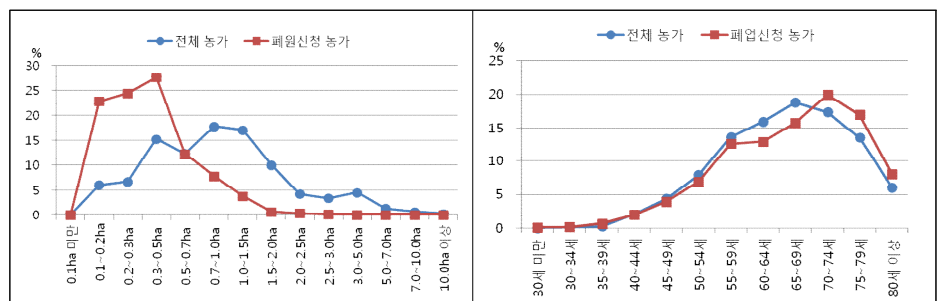
폐업지원으로 포도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
다소 증가, 경영주 평균
연령 다소 감소 전망

□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주가 고령인 한계농 위주의 폐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 기대

- 재배규모가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폐업 신청 비중이 높아 호당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폐업 신청 농가 중 재배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의 수는 약 3천 호이며, 전체 폐업 신청 농가의 75%를 차지함.
 - 폐업에 따른 전국 포도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50ha(2014년 기준)에서 0.52ha(지원 기준)로 증가할 전망

-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의 신청 비중이 높아 포도농가 고령화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폐업 신청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 수는 약 1,800호이며, 전체 폐업 신청 농가의 45%를 차지함.
 - 폐업에 따른 전국 포도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2세(2014년 기준)에서 64.4세(신청 기준)로 줄어듦 전망

그림 6. 전체 포도농가와 폐업 신청 농가의 재배면적과 경영주 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폐업 신청 현황 자료.

□ 그러나 폐업지원 이후 신규 농가 진입이 예상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칠레 FTA 발효 후 실시했던 폐업지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일부 농가가 폐업하는 동시에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도 나타날 수 있음.
 - 2004~2008년 한·칠레 FTA 폐업지원 결과, 복숭아 폐업 규모는 5,225ha이며, 폐업지원 기간 실제 감소한 재배면적은 3,242ha로 동기간 신규로 증가한 면적은 1,983ha임.

- 시설포도의 경우 폐업지원 기간 재배면적이 오히려 368ha 증가했으며, 폐원 규모(482ha)를 감안하면 동 기간 신규로 증가한 면적은 850ha에 달함.
- 단, 최근 포도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생산여건이 악화되어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표 5. 한·칠레 FTA 폐업지원 시기 복숭아와 포도(시설)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구 분	재배면적			폐원 규모 (D)	신규 증가 면적 (E: D-C)
	2003년 (A)	2008년 (B)	감소분 (C: A-B)		
복숭아	15,880	12,638	3,242	5,225	1,983
포도(시설)	1,641	2,009	-368	482	850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포도 폐원 후 재배하는 대체작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폐원 이후 작목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체작목의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해당 작목의 기존 재배농가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다른 경종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은 과수 폐원 농가의 경우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과수로 작목을 전환할 가능성이 큼.
 - 경상북도 Y시의 포도 폐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목 전환 의향조사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등의 과수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D군의 경우, 조사대상 100호 농가 중 56호 농가가 폐업 후 복숭아, 딸기, 자두 등의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특용작물, 채소와 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각각 11호, 5호와 3호였음 (충청북도 D군청).
- 그러나 지역별 농업 생산 여건에 따라 폐원 농가의 대체작물 선호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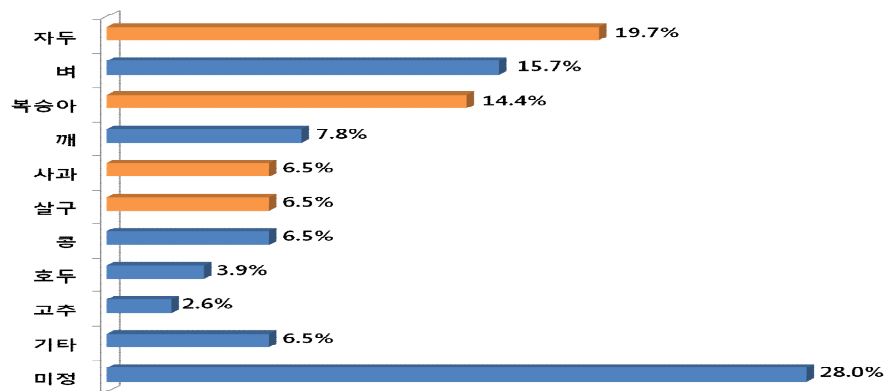
포도 폐원 후
대체작목의 생산량
증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단, 지역과 농가의
특성에 따라 풍선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

- 과수 생산에 있어 판로 확보, 재배기술 전수 등이 중요한 만큼, 과수 산업이 이미 특화되어 유통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생산자조직이 구성되어 정보와 기술 공유가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품목을 대체작목으로 선택하는 농가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과수 품목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재식에서 수확까지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영세농과 고령농은 대체작목으로 과수 품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
- ※ 풍선효과: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냄. 여기서는 폐업지원으로 포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대신 대체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함.

그림 7. 경상북도 Y시 포도 폐업 신청 농가 대상 작목 전환 의향조사 결과



주 경상북도 Y시 전체 폐업 신청 농가 중 10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복수의 대체작목을 선택한 농가도 있음
자료 경상북도 Y시 농업기술센터

4. 시사점

- 영세 고령농 중심의 폐원으로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서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폐업지원을 통한 포도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지만, 국산 과일은 물론 수입포도를 비롯한 각종 수입과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포도 가격 상승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음.
- 폐업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포도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포도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 걸친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 경상북도 Y시와 충청북도 D군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대부분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음.
-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 대체작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술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 폐업지원과 함께 다양한 대체작목을 보급함으로써 특정 작목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풍선효과를 최소화해야 함.
 -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 농업발전의 틀 안에서 대체작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함.
 -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 폐업지원제도와 연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함.

“

영세 고령농 중심의
폐원으로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폐업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폐업지원이 해당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은 경합관계에 있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한 번 잠식된 시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짐.
- 따라서 폐업 신청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농가의 영농일정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전산입력시스템(Agrix)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 특히, 농가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홍보 강화)과 농가의 영농일정(수확 전, 재배, 수확 후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포도 폐업신청 농가에 지원 대상자 확정 여부를 조속히 통보하여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 제도 시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폐업지원 대상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인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과 비용 투입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방안의 사전 수립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
- 특히, 부부를 개별 농업경영체로 인정하고 일부 부분폐업을 허용한 만큼, 이를 중점 관리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KREI 현안분석 제7호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현황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2. 12.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